

의안번호	제 7 호
의 결 년 월 일	2006년 8월 1일 (171회)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음 성 군 수
제출년월일	2006년 7월 27일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
----------	---

제출년월일 : 2006.7.27

제출자 : 음성군수

소관 부서 : 재무과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검토 조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 지급대상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규정
 - 지급대상: 체납액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고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공무원(별정직.기능직.임시직.계약직등)
 -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체납액 징수에 대한 지급기준 세분화
 - 과년도 체납액 1년차를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100을 지급하고, 2년차를 징수한 경우에는 3/100,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5/100를 지급
 - 미등기 전매 재산취득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10를 지급
- 미수금 징수에 대한 지급한도를 1건당 30만원 이하로 규정
-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민간인. 계약직 공무원은 월지급액 300만원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한후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지급

3. 조례개정안 : 별지붙임

4. 참고사항

- 1) 관련법령 및 근거 : 붙임참조
- 2) 예산사항 : 해당없음
- 3)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 : 해당없음
- 4) 입법예고 결과
 - 2006.5.15~2006.6.3(20일간)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 없음
- 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일 시 : 2006. 6. 29(제200회)
 - 결 과 : 원안의결
- 6) 시행일 : 의회의결 후 공포한날 시행

음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음성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공무원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재무과장은 당연직이 되며, 위원은 지방세 업무경력이 있거나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5급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①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과년도체납액 징수대장

징수 월 일	징수자		징수액				체납자		담당 확인	비고
	직급	성명	년도납기	과세번호	과목	징수액	주소	성명		

(별지 제2호 서식)

숨은세원발굴 과징대장

납기	부과자 (제보자)		과목	구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수 월일	담당 확인	비고
	직급(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1. 구분 란에는 과표초과, 미등기, 등기1년경과, 무단점용 등을 표시할 것.
2. 발굴세원 란에는 과세대상을 기재 할 것.

(별지 제3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수신 : 음성군수

발신 : 읍 면 장 (인)

참조 : 재무과장

구 분	건수	금 액			포상금	비고
		세액	가산금	계		
과년도채납액징수						
숨은세원 발굴	과 표 초 과					
	미 등 기					
	등기1년경과					
	무 단 점 용					
계						
첨부 : 1. 과년도 채납액 징수내역 (부표 1) 2. 숨은세원 발굴내역서 (부표 2)						

(별지 제3호 서식 부표1)

과년도채납액 징수내역

징 수 자			징 수 내 역			건수	포상금	비고
소속	직급	성명	세액	가산금	계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숨은세원 발굴내역

납기	부 과 자 (제 보 자)			과목	구분	발굴세액	징수월일	건수	포상금
	소속	직위(주소)	성명						

관계법규 발췌

□ 음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정 1974. 6. 17 조례 제331호
개정 1977. 4. 15 조례 제449호
1983. 12. 30 조례 제836호
1989. 3. 7 조례 제1127호
1991. 10. 2 조례 제1286호
1994. 9. 22 조례 제13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세정 운영에 대한 제안 채택자

제3조(지급부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직전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
2.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자 (미등기 취득이라함은 “을”이“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병”에게 매도하여 갑이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취득을 말한다) 징수액의 100분의10

4.납세의무 발생 (등기일 포함) 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 징수액의 100분의5

5.도로.하천 공유수면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자:징수금액의 100분의5

6.우수제안 채택자: 1건당 10만원 이상은 30만원이하(타부서에서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안건은 제외)

② 전항 제3호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자에게 지급한다

③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해 지급되는 포상금은 개인당 분기별 150만원이하, 1건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심사결정) 제3조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제5조 (대장비치) ① 군 재무과 및 읍면에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군 재무과장 및 읍.면장은 매분기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

하는 읍.면장 또는 군재무과장이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포상금의 신청은 포상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전조의 신청서에 의해 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필한 후 익월중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1974. 6. 17 조례 제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4. 15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30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7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0. 2 조례 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 22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별지]1 과년도채납액징수대장

[별지]1-1 채납액 징수대장(내역)

[별지]2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

[별지]2-1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

[별지]3 징수포상금 신청서

□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70조 (지급명령)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하는 때에는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지급명령의 종류) ①지급명령은 통상지급명령·송금지급명령 및 집합지급명령의 3종으로 한다.

②통상지급명령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발한다.

③송금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소에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④집합지급명령은 지출과목이 동일한 것을 수인의 채권자에게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환부이자 계산)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비율로 한다.

※ 참고 : 국세환부이자 1일 10/100,000 (2005.10.15 국세청장 고시)